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7차 기획재정위원회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복권수익금 법정배분 대상에 지방소멸대응기금 추가〉
■ 한병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2066호)

2024. 11.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송주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참고사항	2
IV . 검토의견	3
1. 복권수익금 법정배분 대상에 지방소멸대응기금 추가 및 배분 비율 상향(안 제23조제1항제12호 신설 등)	3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한병도의원 등 12인

나. 발 의 일 : 2024. 7. 22.

다. 회 부 일 : 2024. 7. 2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매년 복권수익금의 100분의 35를 과학기술진흥기금과 국민체육진흥기금, 문화재보호기금 등에 의무 배분하여 각 기금의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지방소멸대응기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복권수익금이 증가함에 따라 법정배분금도 2020회계연도 7,296억원에서 2024회계연도 1조 401억원으로 크게 늘었는데, 국회와 감사원 등에서는 국가재원의 배분 및 복권기금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법정배분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음.

한편, 지방소멸대응기금 재원은 연 1조원의 정부출연금으로 조성되는데,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 및 18개 관심지역에 배분된다는 점에서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기에는 그 규모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국가적 위기로 대두된 지방소멸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필요한데, 복권수익금 의무 배분 대상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추가하고 의무 배분 대상이 증가함에 따라 복권수익금의 의무 배분율을 상향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복권수익금의 의무 배분율을 100분의 40으로 상향하고, 복권수

익금 의무 배분 대상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추가하여 중·장기적으로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 및 별표 제12호 신설).

Ⅲ.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한병도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6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IV. 검토의견

1. 복권수익금 법정배분 대상에 「지방소멸대응기금」 추가 및 배분 비율 상향(안 제23조제1항 및 별표 제12호 신설)

현행	개정안
○ 복권수익금 법정배분 비율 - 매년 복권수익금 가운데 <u>100분의 35</u>는 다음 각 호의 기금 등에 배분하되 그 배분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단서 생략)	○ 복권수익금 법정배분 비율 - 매년 복권수익금 가운데 <u>100분의 40</u>는 다음 각 호의 기금 등에 배분하되 그 배분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단서 생략)
○ 복권수익금 법정배분사업 - 과학기술진흥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지방자치단체 등 10개 기관·기금 - <신설>	○ 복권수익금 법정배분사업 - (현행과 같음) - 지방소멸대응기금

현행법은 복권수익금의 35%를 10개의 기관·기금 등에 배분¹⁾하도록 하고, 나머지 수익금은 저소득·소외계층 복지사업 등 공익사업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 1)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복권기금의 배분 및 용도) ① 매년 복권수익금 가운데 100분의 35는 다음 각 호의 기금 등에 배분하되 그 배분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복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금 등의 자금소요 및 제22조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각 기금 등의 배분비율에 대하여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감 조정할 수 있다.
1.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에 따른 과학기술진흥기금
 2. 「국민체육진흥법」 제19조에 따른 국민체육진흥기금
 3. 「근로복지기본법」 제87조에 따른 근로복지진흥기금
 4. 삭제
 5.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6. 「국가유산보호기금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보호기금
 7. 지방자치단체
 8.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0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특별회계
 9.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10.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에 따른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
 11.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복권기금 지원사업비의 배분 및 용도]

(단위: 억원)

구분	2024년도 계획액	용도
법정배분사업	10,402	· 과학기술진흥기금 전출 · 국민체육진흥기금 전출 · 근로복지진흥기금 전출 ·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전출 · 국가유산보호기금 전출 · 지방자치단체 지원 ·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지원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 ·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 지원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지원
공익사업	20,539	· 저소득층 주거안정 지원사업 · 국가유공자 복지사업 · 소외계층 복지사업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 문화·예술 진흥사업

※ 자료: 기획재정부

개정안은 복권수익금의 법정배분 대상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지방기금법”이라 함) 제22조에 따른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추가하고, 배분 대상이 증가함에 따라 복권수익금의 법정배분비율을 현행 35%에서 40%로 상향하려는 것임.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 주도의 지방소멸 대응 사업 추진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2021년 지방기금법 개정을 통해 2022년 도입되어 2022년부터 2031년까지 10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기금으로, 2023회계연도 결산 기준 수입 및 지출규모는 1조원임.

동 개정안과 함께 제출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부출연금을 연 1조원에서 2조원으로 상향하고 복권수익금을 추가하는 등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재원을 추가하고 현행 2031년

까지인 기금의 유효기간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지방소멸대응기금 개요(「지방기금법」)]

구 분	내 용
기금의 설치 (제22조제1항)	· 시·도는 지방소멸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설치
기금의 재원 (제23조)	· 정부출연금 1조원 ·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전년도 결산상 잉여금
기금의 용도 (제24조제1항)	· 지방소멸대응 등 관련 기반시설 조성 등을 위한 시·도에 대한 재정지원 · 지방소멸대응 등 관련 기반시설 조성 등을 위한 시·군·자치구에 대한 재정지원 · 그 밖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지출
기금의 유효기간 (부칙2 제2조제2항)	· 제22조부터 제29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2022년 1월 1일)부터 203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내용]

· 기금의 재원 추가 - 정부출연금 증액: (현행) 1조원 → (개정) 2조원 -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신설)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배분된 복권수익금 (신설) ·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유효기간 삭제 - (현행) 2022년 1월 1일부터 2031년 12월 31일까지 효력 → (개정) 삭제
--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복권수익금의 법정배분 대상에 추가하고, 복권 수익금의 법정배분비율을 현행 35%에서 40%로 상향하려는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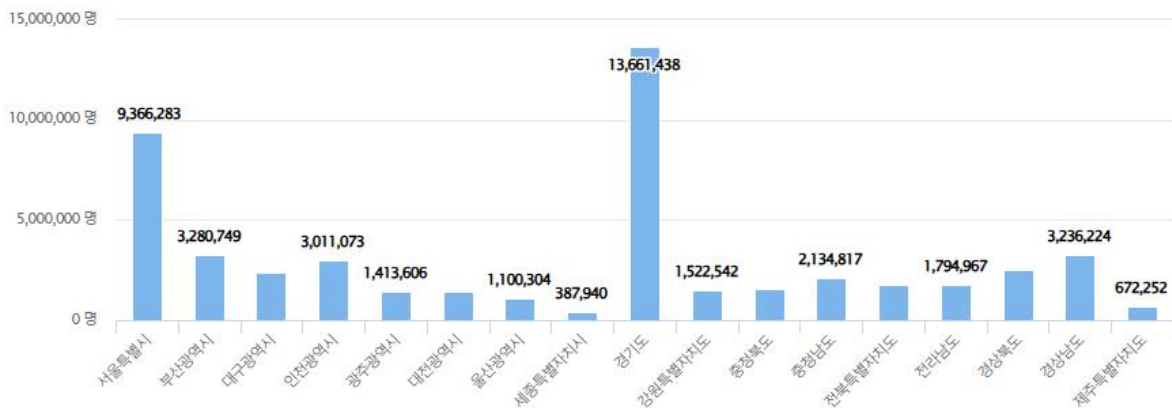
첫째, 최근 국가 불균형 발전이 심화되고 비수도권 지역의 지방소멸

2) 법률 제18545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시행 2022. 1. 1.) 부칙 제2조제2항

의 우려가 큰 상황에서 지방소멸 대응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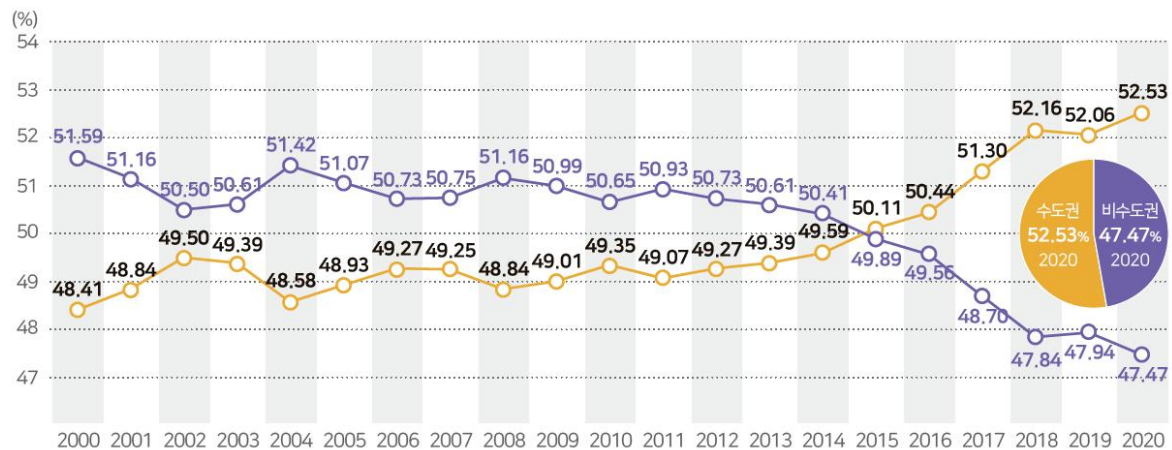
우리나라는 여러 기업과 일자리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인구의 절반이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등³⁾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성장격차가 확대되고 있으며, 경기 침체와 지속적인 인구 유출로 인하여 비수도권 지역의 지방소멸의 우려가 큰 상황임.

[행정동별 주민등록 인구 현황]



※ 자료: 행정안전부, 행정동별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행정구역별)(2024.6.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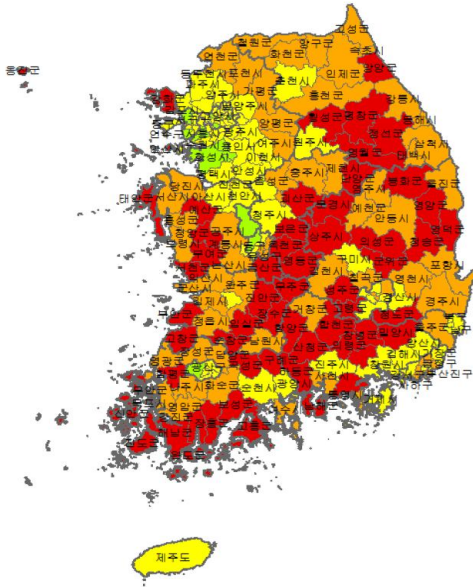
[지역 내 총생산(GRDP)의 비수도권 비율 변화(2000~2020)]



※ 자료: 국토교통부, 2021년 국토조사 보고서(국토조사연감)

3) 전국 면적에서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이 차지하는 비중은 11.8%에 불구함에도 전체 인구의 50.8%가 거주하고 있으며, 지역 내 총생산(GRDP)도 수도권이 전체의 52.5%를 차지하고 있음.

[전국 228개 시군구별 소멸위험지역 현황(2024년 3월 기준)]



명칭		소멸위험지수 ¹⁾²⁾	범주
소멸저위험		1.5 이상	■
정상지역		1.0~1.5 미만	■
소멸주의단계		0.5~1.0 미만	■
소멸 위험	소멸위험진입	0.2~0.5 미만	■
	소멸고위험	0.2 미만	■

1) 소멸위험지역은 소멸위험지수(20~39세 여성 인구수를 65세 이상 인구수로 나눈 값)를 통해 측정되며, 소멸 위험지수 값이 0.5 미만이면 소멸위험진입단계, 0.2 미만 이면 소멸고위험단계로 구분됨

2) 전체 228개 시군구 중 소멸위험지역은 130개(57.0%)

※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지역산업과 고용(2024년 여름호) 자료를 토대로 재구성

따라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법정배분기관으로 명시하여 복권수익금이라는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 등 낙후지역의 인프라 개선에 추가적인 재정지원을 한다면, 지역 불균형 발전 해소 및 지방소멸 대응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을 것임.

둘째, 현행과 같이 법정배분비율을 복권수익금의 35%로 고정한 상태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법정배분기관으로 추가하는 경우 복권수익금의 지원을 받고 있는 기존 기관·기금 등에 대한 배분액이 감소하게 되므로 기존 수혜기관 등의 반발이 제기될 우려가 있으며 복권수익금을 지원받아 진행하고 있던 사업의 중단·축소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법정배분기관으로 추가하는 경우 개정안과 같이 배분 비율을 40%로 상향하는 것을 고려해 필요가 있겠음.

참고로, 2004년 「복권 및 복권기금법」(이하 “복권법”이라 함) 제정 당시 기존 10개 복권발행기관의 수입을 보장하기 위해 복권기금의 수익금 중 “30%”를 배분하도록 법정배분제도를 규정하였으나, 이후 2009년 「문화재보호기금법」 제3조에 따른 문화재보호기금⁴⁾이 복권 수익금의 배분 대상에 추가되면서(10개 기관 → 11개 기관), 이를 고려하여 법정배분비율 또한 복권수입금의 “35%”로 상향 조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음.⁵⁾

다만, 복권수익금 법정배분 대상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추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법정배분비율이 기관별로 법령에 규정되어 있어 복권기금이 경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상술한 바와 같이 법정배분제도는 2004년 복권법 제정에 따라 기존 복권발행기관의 수입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자체수입이 복권법 제정 당시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하여 복권수익금 지원 없이 자체 사업 운용이 가능한 기관에도 복권수익금이 배분되거나⁶⁾, 사회여건 변화에 따라 추가 사업 수요가 있음에도 기관별 배분비율을 초과한 지원이 이뤄질 수 없음에 따라 제한된 규모로 지원된 경우가 발생하는 등 현행법령에 따라 정해진 기관별 정률 배분체계는 탄력적인 재정운용을 저해하는

4) 현행 “「국가유산보호기금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보호기금”

5) 다만, 복권법 제정 당시 법정배분기관이었던 ‘주택도시기금’이 2016년 법정배분기관에서 제외되었음에도(11개 기관 → 10개 기관), 배분비율은 동일하게 35%로 유지되는 중임.

6) 감사원, 중장기 재정관리제도 운영실태, 2021. 5.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특히, 취약계층 보호 등 복지 분야에서 국가재정 지원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반면에 이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재정 여력의 폭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복권수익금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배분·집행은 취약계층 등 국민의 복지증진뿐만 아니라 국가재정의 운용 측면에서도 중요할 것임.

이와 같이 복권수익금의 효율적 배분을 위한 법정배분제도 전반에 대한 개편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에서, 법정배분기관을 추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둘째, 현행 복권법에서도 이미 법정배분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0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특별회계(이하 “제주특별회계”이라 함) 사업을 지원 중임.

현행 복권법 제23조제1항 및 별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사업은 17개 시·도의 지역개발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제주특별회계 역시 다양한 제주도 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하고 있음.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방기금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지방소멸대응 관련 기반시설(인프라) 조성 등을 위하여 2022년부터 10년간 한시적으로 지자체에 재정을 지원하고 있는데, 동 개정안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라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법정배분기관에 추가하고

기금의 유효기간을 삭제하여 상설화할 경우, 기존의 지자체 관련 법정 배분사업들과 상당 부분 중복이 발생할 수 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겠음.

셋째, 법정배분비율을 40%로 상향할 경우 그만큼 공익사업 지원이 감소하게 됨.

현행 복권법은 복권수익금의 35%를 10개의 법정배분기관·기금 등에 배분하도록 하고, 복권수익금의 65% 및 기타수입금은 저소득층 주거안정 지원사업, 국가유공자 복지사업,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사업,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문화·예술 진흥사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사업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⁷⁾

법정배분비율이 35%에서 40%로 상향될 경우 복권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공익사업의 지원액은 복권수익금의 60% 및 기타수입금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으며, 이 경우 복권수입금을 지원받아 진행하고 있던 다양한 공익사업의 중단·축소가 발생하므로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겠음.

7)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복권기금의 배분 및 용도) ③ 제1항에 따라 배분된 복권수익금과 제4항에 따른 비용 및 경비를 제외한 복권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사용한다. 다만, 제5호의 사업에 사용되는 복권기금의 비율은 100분의 5 범위로 한다.

1. 임대주택의 건설 등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지원사업
2. 국가유공자에 대한 복지사업
3. 저소득층, 장애인,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여성, 불우청소년 등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사업과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4. 문화·예술 진흥사업
5.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복권수익금 배분체계]

(단위: %, 백만원)

복권수익금	35%	법정배분사업	<법정대상기관>		<배분비율>	<'22결산>	<'23수정>	<'24계획>	
			과 학 기 술 진 흥 기 금		12.583	101,244	109,957	125,055	
			국 민 체 육 진 흥 기 금		10.371	93,814	91,450	91,954	
			근 로 복 지 진 흥 기 금		5.310	59,758	64,400	63,513	
			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		6.356	74,666	78,907	72,752	
			문 화 재 보 호 기 금		14.286	140,643	158,339	152,611	
			지 방 자 치 단 체		17.267	152,750	176,062	169,863	
			제 주 개 발 특 별 회 계		17.267	167,851	176,999	179,600	
			사 회 복 지 공 동 모 금 회		4.286	40,082	47,205	41,697	
			산 림 환 경 증 진 자 금		5.846	69,057	72,576	72,967	
			보 훈 복 지 의 료 공 단		6.428	55,253	58,664	70,138	
			<소계>		100.0	955,118	1,034,559	1,040,150	
복권수익금	65%	공익사업	<공익사업 분야>		<사업기관>		<'22결산>	<'23수정>	<'24계획>
			저소득 주거안정		주 택 도 시 기 금		550,397	450,040	450,040
			국가유공자 복지		보 훈 기 금		16,169	22,919	22,076
			저소득·소외계층	양 성 평 등 기 금		595,576	675,632	758,242	
				청 소 년 육 성 기 금		135,750	149,817	149,596	
				근로복지진흥기금		100,000	-	-	
				기 후 대 응 기 금		-	95,646	108,333	
				보 건 복 지 부		71,227	91,708	95,458	
				고 용 노 동 부		2,054	2,054	-	
				법 무 부		1,484	-	-	
				교 육 부		106,079	115,386	32,413	
			금 융 위 원 회		236,531	212,484	181,969		
			문화·예술진흥	문화예술진흥기금		173,868	243,896	248,786	
				영 화 발 전 기 금		-	-	5,400	
			재해·재난 구호		응 급 의 료 기 금		5,750	5,635	1,610
			<소계>			1,994,885	2,065,217	2,053,923	
			<총 계>			2,950,003	3,099,776	3,094,073	

※ 자료: 기획재정부, 2024년도 복권기금운용계획

한편, 개정안은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6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동 위원회의 심사과정을 감안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겠음.

동 개정안에 대하여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소관기관인 행정안전부는 복권수익금 배분을 통해 지방소멸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지자체 지원을 강화한다는 개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지방소멸대응기금 규모의 확대와 관련하여 재정당국과 협의가 필요하며,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의 배분이 복권기금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여부는 기획재정부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기획재정부는 개정안과 같이 법정배분기관을 추가하는 것은 당초 법정배분제도 도입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향후 지속적으로 유사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⁸⁾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국회·감사원 등에서 재정운용의 칸막이화에 따른 경직성·비효율성 등을 해소하기 위해 법정배분제도를 개선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고, 현재 지역발전 등을 위해 법정배분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 지원 및 제주특별회계 사업을 지원 중⁹⁾인 점도 감안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8) 제21대 국회에서 '법정배분기관 추가' 관련 복권법 개정안 총 8개 발의

9) 현재 법정배분 총 35% 중 지자체 및 제주도 지원 비율 합계 12.086%로 전체의 1/3이상 차지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3조(복권기금의 배분 및 용도) ① 매년 복권수익금 가운데 <u>100분의 35</u> 는 다음 각 호의 기금 등에 배분하 되 그 배분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다만, 복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금 등의 자금소요 및 제22조 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 등을 고려 하여 각 기금 등의 배분비율에 대하 여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감 조정할 수 있다. 1. ~ 11. (생략) <u><신설></u>	제23조(복권기금의 배분 및 용도) ① - ----- <u>100분의 40</u> ----- ----- ----- --. ----- ----- ----- ----- ----- ----- ----. 1. ~ 11. (현행과 같음) 1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 법」 제22조에 따른 지방소멸대 응기금 ② ~ ⑥ (현행과 같음)
② ~ ⑥ (생략)	

문의처

02)6788-5153

□ 기금개요

- (법적근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 (규모/근거) 연 1조원(기초75%, 광역25%) 규모로 10년간 지원('22년~'31년)
※ '22년은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총 0.75조원 지원
- (운용방법) 기금관리조합(17개 시·도로 구성)이 관리·운용*하되, 기금 배분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안부장관이 정함('24.1월 배분기준 개정)
*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위탁하여 업무 수행

□ 배분계획

- (배분규모) 기초지원계정 7,500억 / 광역지원계정 2,500억
- (배분방식)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행안부고시)에 근거
* ('23년 평가기준) 지역 여건 분석 및 전략 수립(20%), 기금사업(40%), 타 재정·정책 연계 방안(20%), 운영 및 관리체계(15%), 기타(5%), 가점(최대 3점) 등
- (기초계정) 자치단체가 수립한 투자계획 평가 및 등급별 차등 배분
- (광역계정) 평가 없이 인구·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액 배분

지방소멸 대응기금 (연 1조)	기초계정 (75%, 7,500억)	인구감소지역 89개 (95%, 7,125억)	▶ 투자계획을 평가하여 차등 배분 ⇒ 성과 지향적 운용
		관심지역 18개 (5%, 375억)	
	광역계정 (25%, 2,500억)	인구감소지수, 재정자립도, 인구밀도 등을 고려하여 배분(1,500억)	▶ 산식에 따라 정액 배분 ⇒ 지역 여건을 반영하여 운용 ▶ 광역별 배분금액의 40% 출자 ※ 배분기준 개정('24.1.16.)
		지역활성화투자펀드 출자(1,000억, '24.~)	

□ `22~`23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기준

○ 광역지원계정

(단위: 억원)

구 분	전남	경북	강원	전북	경남	충남	충북	부산	대구	광주	제주	인천	대전	울산	경기
배분금액 (`22년)	378	363	258	240	223	179	119	26	24	14	14	12	9	9	4
배분금액 (`23년)	504	484	344	320	297	239	159	34	32	19	19	16	12	12	5

※ 억 단위로 반올림하여 제시한 금액이며, 산식에 따라 세부 금액을 산출하여 결정

○ 기초지원계정

< 인구감소지역(89개 시·군·구) >

등급	자치단체 수(비율)	배분금액(억)		
		'22	'23	합계
A	4(5%)	90	120	210
B	13(15%)	72	96	168
C	39(45%)	60	80	140
D	18(20%)	54	72	126
E	15(15%)	48	64	112

< 관심지역(18개 시·군·구) >

등급	자치단체 수(비율)	배분금액(억)		
		'22	'23	합계
A	1(5%)	23	30	53
B	3(15%)	18	24	42
C	9(45%)	15	20	35
D	3(20%)	14	18	32
E	2(15%)	12	16	28

□ `24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기준

○ 광역지원계정

(단위: 억원)

구분	전남	경북	강원	전북	경남	충남	충북	부산	대구	광주	제주	인천	대전	울산	경기
배분금액	508	449	346	322	299	241	160	34	53	18	18	15	12	12	4

※ 억 단위로 버림하여 제시한 금액임

※ 경북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23.7.1.)에 따라, 전년도 배분금액과 차이 발생

○ 기초지원계정

< 인구감소지역('23년도) >

등급	자치단체 수(비율)	배분금액(억)
A	4(5%)	120
B	13(15%)	96
C	39(45%)	80
D	18(20%)	72
E	15(15%)	64

⇒

< 인구감소지역('24년도) >

등급	자치단체 수(비율)	배분금액(억)
S	4(5%)	144
A	14(15%)	112
B	26(30%)	80
C	45(50%)	64

< 관심지역('23년도) >

등급	자치단체 수(비율)	배분금액(억)
A	1(5%)	30
B	3(15%)	24
C	9(45%)	20
D	3(20%)	18
E	2(15%)	16

⇒

< 관심지역('24년도) >

등급	자치단체 수(비율)	배분금액(억)
S	1(5%)	36
A	3(15%)	28
B	5(30%)	20
C	9(50%)	16